소상공인·전통시장자금 접수 공고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**(성공보수, 서류작성 수수료, 보험가입)**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,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.

제3자(브로커 등)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.

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. (☎ 전국 1357)

연체, 현금서비스 이용 등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,
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주요사례: 기존대출 만기연장거절, 만기연장 시 내입(일부상환) 또는 가산금리 인상, 신규대출거절, 신용카드 이용한도 하향조정 또는 신규발급 거절 등)

□ 개요

○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

□ 지원대상 : ①업력 90일 이상 ②저신용 ③소상공인

① (업력 90일)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,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

② (저신용)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*

* 개인: 대표자(주채무자)의 NCB개인신용평점
법인: (공동)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

③ (소상공인)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*을 충족

*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인 미만)

** 개인과세사업자, 개인면세사업자,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. 비영리사업자, 외국법인의 본·지점,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

※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·지원불가(세금체납, 연체, 휴·폐업, 융자제외업종, 사업장·자가주택 권리침해, 자기자본 전액잠식,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)

□ 융자 규모 및 조건

○ (공급규모) 8,000억원

○ (대출한도) 3,000만원 이내(연 1회),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

* (각자, 공동)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, 1개만 지원

**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(실행연도 무관)는 총 3,000만원(대출잔액 기준)

< 대출한도 차등적용 기준 >

개인신용평점	744~710점	709~595점	594~355점	354~350점	349~1점
대출한도	3,000만원	2,500만원	2,000만원	1,500만원	1,000만원

○ (금리 기간) 연 2.0%(고정금리), 5년(2년 거치, 3년 분할상환)

□ 신청 · 접수기간 : '23년 1월 16일(월) 09:00 ~ 예산 소진 시까지

○ 신청·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,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·접수 진행

<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 >

신청회차	1회차	2회차	3회차
신청기간	1.16(월)~자금소진 시	2.20(월)~자금소진 시	3.20(월)~자금소진 시
공급규모	4,000억원	2,000억원	2,000억원

○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'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* 운영

* 토·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·접수 불가

– (신청 접수시간) 1.16.~1.31.(홀짝제기간) 매일 09:00~24:00, 홀짝제가 종료되는 2.1.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

< 홀짝제 일자별 신청 대상 >

신청 일자	1.16 (월)	1.17 (화)	1.18 (수)	1.19 (목)	1.20 (금)	1.25 (수)	1.26 (목)	1.27 (금)	1.30 (월)	1.31 (화)
신청구분	짝수	홀수	짝수	홀수	짝수	홀수	짝수	홀수	짝수	홀수
출생연도 끝자리	2, 4, 6, 8, 0	1, 3, 5, 7, 9	2, 4, 6, 8, 0	1, 3, 5, 7, 9	2, 4, 6, 8, 0	1, 3, 5, 7, 9	2, 4, 6, 8, 0	1, 3, 5, 7, 9	2, 4, 6, 8, 0	1, 3, 5, 7, 9

□ 신청방법 및 약정

○ (온라인 신청)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(https:/ / ols.sbiz.or.kr)에 신청

○ (심사절차)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

*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

○ (약정)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

－(개인사업자)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

－(법인사업자)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

□ 유의사항

○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

□ 문의처

○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
○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77개)